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14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단체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석

변 론 종 결 2023. 2. 28.

판 결 선 고 2023. 3. 14.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 3. 11. 접수 제24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 1) 원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은 2018. 6. 27. 원고가 E이 F 주식회사(이하 'F은행')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3억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금액 2억 7,000만 원을 한도로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2018. 8. 16. 원고가 E이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금액 1억 1,700만 원을 한도로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2018. 6. 27.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2018. 8. 16.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D은 E의 대표이사로서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원고는 2019. 4. 16. D과 D이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1억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금액 9,000만 원을 한도로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 3) E은 F은행으로부터 2018. 6. 28. 3억 원, 2018. 8. 16. 1억 3,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D은 2019. 4. 22. F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 4) F은행은 E과 D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6. 10. F은행에 E을 대위하여 E의 2018. 6. 28.자 대출금 중 251,088,675원, 2018. 8. 16.자 대출금 중 107,551,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2022. 7. 14. F은행에 D을 대위하여 2019. 4. 22.자 대출금 중 92,642,029원을 변제하였다.
- 5) 원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차전4503호로 원고가 2022. 7. 14. D의 F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2. 11. 18. 'D은 원고에게 95,281,940원 및 그중 92,642,029원에 대하여 2022.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2. 12. 8.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D은 2022. 3. 11. 피고와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 3. 11. 접수 제2445호로 채권최고액이 70,000,000원, 근저당권자가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2. 3. 11.에는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제1 내지 3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상 채무자인 E의 연대보증인의 지위,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상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E은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D은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각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② E은 2022. 3. 1.부터 F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D도 그 무렵부터 F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D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원고가 2022. 6. 10. 및 2022. 7. 14. E과 D의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D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리라는 개연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하여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G회사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2. 3. 11. D의 적극재산으로는 402,697,000원¹⁾ 상당의 경북 영덕군 H 답 638㎡ 중 1/2 지분,

I 전 12,520㎡ 중 1/2 지분, J 전 2,580㎡ 중 1/2 지분, K 답 2,562㎡ 중 1/2 지분, L 도로 787㎡ 중 1/2 지분, M 전 30㎡ 중 1/2 지분, N 임야 891㎡ 중 1/2 지분과 7,500,000원²⁾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451,281,704원(= 251,088,675원 + 107,551,000원 + 92,642,029원) 상당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3,000만 원 상당의 O조합에 대한 채무 등이 있어 D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의 채무초과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에 대하여 대여한 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호

별지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P 사건에서 2022. 10. 25. 기준으로 감정평가된 805,394,000원에서 D의 지분 1/2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2) D은 2015. 7. 16. 이 사건 부동산을 4,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2015. 1. 1. 기준 3,000만 원, 2022. 1. 1. 기준 3,240만 원으로서 차이가 크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4,000만 원으로 인정하되, 2020. 10. 6.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근저당권자 Q조합)의 채권최고액 3,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을 가액으로 본다.